

한-중 공동 제작 협정 (China-Korea Co-Production Treaty)

Thomas Leo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과 대한민국 (“한국”) 정부는 2014년 9월 1일 발효된 공동 제작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정은 한쪽 국가의 국민 1인 이상이 다른 쪽 국가의 국민 1인 이상과 공동 제작하고, 본 협정에 따라 제작된 영화에 대하여 각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즉, 중국 또는 한국) 영화에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공동 제작으로 인정되는 영화의 중국 내국민 대우의 주요 혜택은 해외 영화에 적용되는 중국의 수입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협정은 공동 제작 영화의 제작과 홍보를 촉진하기 위해 상대방 국가 국민이 자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한중간 기술 장비와 영화 물자의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수입 관세 및 세금을 면제하는 것과 같은 한중 공동 제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본 협정은 각 국가가 “권한 있는 당국”을 지정하여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책임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전영국 (“Film Bureau of the State Administration of Press, Publication, Radio, Film and Television”)이며, 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영화진흥위원회 (“Korean Film Council”)입니다. 또한, 본 협정에 따라 공동제작영화의 공동 제작 지위를 평가하는 중국 측의 주관 기관으로 중국전영합작제편공사가 지정되었습니다.

모든 공동 제작 영화는 제작 전 양쪽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반드시 획득해야만 합니다 (중국의 경우 “계획 수립” 지위라 칭하며, 한국의 경우 서면 예비 승인으로 확인함). 본 협약에 따른 자격을 얻기 위해서 공동 제작 영화는 반드시 예비 승인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이 완료된 공동 제작 영화는 최종 승인을 얻어야만 합니다 (중국의 경우 “영화 공공상영 허가서”라 지칭하며, 한국의 경우는 최종 승인의 서면 통지로 확인함). 각각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고유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승인 절차를 실시합니다. 공동 제작 영화로의 최종 영화 승인은 해당 영화를 공공에 상영해도 된다는 허가는 아닙니다.

각국 공동 제작자의 공동 제작 영화에 대한 연기적, 기술적, 기능적 기여 비율은 20% 이상,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각국의 공동 제작자의 재정 기여 비율 (현물 기여도 포함 가능)도 20% 이상,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권한이 있는 당국은 한국 또는 중국이 제 3의 국가와 공동 제작 협정을 맺고 있는 경우 해당 제 3국 출신의 공동 제작자와의 공동 제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제 3국 출신 공동 제작자의 기여 비율은 한국과 중국 공동 제작자의 개별 기여도 중 낮은 것보다 높지 않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공동 제작 협정의 요구 사항을 여러 국가 출신의 공동 제작자가 참여하는 하나의 영화에 적용하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본 협정은 기본적으로 3년간 유효하며, 해당 협정의 만료 전 한국 또는 중국 일방이 6개월 사전 통지로 해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3년씩 연장됩니다.